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8월 25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한은경 의원 대표발의]

1. 제안이유

-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,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,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“청년의 날”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).

- 나.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“5명 이상”에서 “2분의 1 이상”으로 확대하고, 위촉직 위원에 “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”을 명문화함(안 제15조제3항).
- 다.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함(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1년 8월 31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은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574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8월 24일

발의의원 : 한은경, 장인수 의원

찬성의원 :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
성길용, 이성혁 의원

□ 제안이유

-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,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,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“청년의 날”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).
- 나.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“5명 이상”에서 “2분의 1 이상”으로 확대하고, 위촉직 위원에 “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”을 명문화함(안 제15조제3항).
- 다.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의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함(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
- 현행 조례 : 「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9조, 제15조, 제21조

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,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「청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행사 등 참여자에게 1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

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5명”을 “2분의 1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청년

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2명의 위원장이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,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이 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행·재정적 지원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행·재정적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,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「청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행사 등 참여자에게 1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5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<u>5명</u>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위촉직 위원</p> <p><u>가. 어느 한 성(性)이 반드시</u></p>	<p>제15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. ----- <u>2분의 1</u>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<u>가.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</u></p>

포함된 오산시의회 의장이
추천하는 사람 3명

나. ~ 마. (생략)

제21조(회의의 소집) ① 당연직
위원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
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
내에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
의 의장이 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
서로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
경우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
하고 당연직 위원장의 위원장이
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
시장은 15일 이내에 반드시 회
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
의장은 위촉직 위원장의 위원장이
된다.

③·④ (생략)

는 시의원 및 청년

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회의의 소집) ① 위원회의
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
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
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2명
의 위원장이 협의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
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
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이 소집하
고,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위원
인 위원장이 된다.

<삭제>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[별첨]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

제20조(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)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조정위원회: 2분의 1 이상
2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(이하 “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”라 한다): 2분의 1 이상
3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: 2분의 1 이상
4.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
 - 가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: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
 - 나. 시·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: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비율

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「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」

제9조(행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, 캠페인, 견학·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,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
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(性)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당연직 위원

가. 부시장

나. 청년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 공무원

다. 시의 기획, 경제, 주택, 복지, 교육, 문화예술, 청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어느 한 성(性)이 반드시 포함된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

나.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

다. 청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
라.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
마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1조(회의의 소집) ① 당연직 위원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15일 이내에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,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보시기와 방법 및 회의자료 배부 등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